

<p>[] 폐자동차재활용업 [] 파쇄재활용업 [] 폐가스류처리업 [] 파쇄잔재물재활용업 등록증</p>			
신청인	상 호		전화번호
	주 소		법인등록번호
	대표자 성명		사업자등록번호
시설·장비			
영업대상폐기물			
재활용 방법			
처리공정			
등록조건			
<p>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(파쇄재활용업·파쇄잔재물재활용업)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을 등록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인</p>			

(뒤쪽)

<변경사항>

연월일	내 용	확 인

<행정처분 사항>

일련번호	연월일	위 반 내 용	연월일	처 분 내 용